화순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 12.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0. 12. 18

다. 상 정 일 자 : 2000. 12. 18

(제9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나. 제정사유

○ 군에서 추진한 지역개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발생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을 마련하여,

○ 향후 집중되는 재무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금부터 적절한 채무 상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지방채 상환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 및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일정율로 함. (안 제2조)

○ 순세계 잉여금의 사용비율은 부채비율이 30%이상은 20/100이상, 20%이상 30%미만은 10/100이상, 20%미만은 재정여건에 따라 사용 한다. (안 제2조)

○ 기금은 지방채 상환기금 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군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안 제4조)

○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위해 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안 제5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양정열)

○ 본 제정 조례안은 중앙의 「채무상환대책 강구지침」에 의거 당해년도 지방예산대비 부채비율이 30%이상인 지방자치단체가 부채규모 증가로 인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 우리군의 2000년도 제1회 추경의 경우 부채비율이 39.6%을 나타내고 있으나 순수한 군비부담 기준으로 보면 19.5%로써 크게 우려할 수준의 채무라고 보여지지는 않으나 본 조례의 제정으로써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을 적립하도록 제도화 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음.

○ 향후, 지방채 사업은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대규모 투자사업으로써 가용재원으로는 도저히 충당할 수 없는 특수한 사업에 한해서 시급성과 사업의 효과성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시행 함으로써 건전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본 조례안 제2조에서 기금의 조성에 대해서는 매년 순세계 잉여금의 일정율를 적립하토록 되어 있는데 적립비율의 적정성이라든가, 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중앙의 「표준안」에 의하여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등 제정절차나 상위 관련 법규의 저촉여부등의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답변 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첨 부 : 화순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화순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0. 11.

제 출 자 : 화 순 군 수

1. 제안이유

○ 군에서 추진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발생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을 마련하여

○ 향후 집중되는 채무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금부터 적절한 채무상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지방채 상환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 및 일반회계 손세계잉여금의 일정율로 함. (안 제2조)

○ 순세계잉여금의 사용비율은 부채비율이 30%이상은 20/100이상, 20%이상~30% 미만은 10/100이상, 20%미만은 재정여건에 따라 사용한다. (안 제2조)

3. 관련근거

○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한 채무상환대책 강구지침(재정 13320-830, 2000. 5. 18)

화순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한 지방채무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지방채상환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②군수는 매년 일반회계 손세계잉여금의 일정율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손세계잉여금의 사용비율은 부채비율이 30%이상일 경우 20/100 이상을 20%이상~30%미만일 경우 10/100이상을 사용하며, 20%미만일 경우는 재정 여건에 따라 사용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군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화순군지방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우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명한 자로 한다.

1. 지방채 발행사업 실과소장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자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회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12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부군수
2. 기금출납원 : 기획예산실장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재13조(위원회의 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화순군각종위

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화순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